

의안번호	2203497
의 퇴 인	서미화 의원
회 답 일	2024. 8. 23.
추 계 번호	24C2651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4,724억원(연평균 1조 94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 (안 제2조)	10,826	10,901	10,959	10,999	11,038	54,724	10,94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※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권자: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1~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만 해당 ※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1~3급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조(정의)	○	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제도운영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“중증장애인”(중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1·2급 또는 3급 중복¹⁾)에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(중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1~3급)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1) 3급 중복은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가리킴

□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
□ (대상자 수) 개정안에 따라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도 전체 수급률 및 세부 유형별 수급자 비중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(전체 대상자 수) 통계청의 18세 이상 장래인구추계 결과(2023.12. 공표통계)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비율 및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(수급률)을 곱하여 추계
 - (현행 수급권자 비율)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18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비율 추이를 적용
 - (개정안에 따른 수급권자 비율) 2019년²⁾부터 2022년까지의 18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 비율 추이를 적용
 - (수급률) 2021년부터 2023년의 평균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(70.59%³⁾)을 적용

[표 2]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(18세 이상)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	521,180	520,176	518,705	514,409	508,975
(인구 대비 비율)	(1.19)	(1.18)	(1.17)	(1.16)	(1.14)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	921,379	920,329	918,341	914,254	904,029
(인구 대비 비율)	(2.10)	(2.09)	(2.07)	(2.06)	(2.03)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(유형별 대상자 수) 연령집단별(18~64세와 65세) 및 급여유형별(기초급여와 부가급여)로 구분하고, 부가급여는 다시 세부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각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
 - 부가급여의 세부 유형은 기초생활보장 재가수급자,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특례, 차상위계층 일반, 차상위계층 급여특례, 차상위 초과 등으로 구분([표 3] 참고)
 - 연령집단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의 평균값 적용, 부가급여 세부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22년 실적치를 적용

2) 장애인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됨

3) 장애인연금은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함

[표 3] 장애인연금 2023년 수급자 수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23년	부가급여 세부유형별 비중
수급권자 수	508,975	—
수급자 수 합계	355,094	—
- 18세~64세	219,478	100.0
기초생활보장 재가수급자	120,867	55.1
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	20,347	9.3
차상위계층 일반	6,871	3.1
차상위 초과	71,393	32.5
- 65세 이상	135,616	100.0
기초생활보장 재가수급자	52,556	38.8
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	5,605	4.1
시설수급자 특례	1,356	1.0
차상위계층 일반	7,524	5.5
차상위계층 초과	67,137	49.5
차상위 급여특례	1,438	1.1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(1인당 월 지급액)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합산하여 전액 지급액을 산정하고, 부부 2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액률(20% 감액)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액 산정

- (기초급여액) 2024년 기준 기초급여액(334,810원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⁴⁾를 적용하여 산출하되, 부부 2인이 모두 수급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부감액 적용
- (부가급여액) 2024년 지급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, 차상위초과자,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별 차등 정액 지급(65세 이상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단가를 제외하고는 매년 고정된 단가로 지급 중)
 - 65세 이상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(2024년 424,810원)는 항상 65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기초급여(2024년 334,810원)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(9만원)의 합으로 이루어지므로, 이러한 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추계

4) 국회예산정책처 거시변수 전망치(2024.3.29. 경제전망 기준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2	2.2	2.1	2.1	2.1

[표 5]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 단가

(단위: 원)

구 분		18세 이상 65세 미만	65세 이상
기초급여 ※ 부부감액 적용		334,810 ^(A)	0
부가급여 ※ 부부감액 미적용	기초생활보장 재가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	90,000 ^(B)	424,810 ^(A+B)
	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특례 ¹⁾ (생계·의료급여)	0	80,000
	차상위계층 ²⁾ 일반(주거·교육급여)	80,000	80,000
	※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		
	차상위계층 급여특례 ³⁾ (주거·교육급여)	0	150,000
	※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		
차상위 초과 ⁴⁾		30,000	30,000

주: 1)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특례: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(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)이고 종전 장애수당(기초생활 수급자)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(시설수급자 급여특례가 아닌 단순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)
 2) 차상위계층: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),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해당자
 3) 차상위계층 급여특례: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(차상위계층)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(65세 연령 도래자 포함)
 4) 차상위 초과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

자료: 보건복지부 「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

□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4,724 억원(연평균 1조 945억원)으로 추계됨

-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조 3,320억원으로 추계
-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범위 확대 시 총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조 8,044억원으로 추계

[표 6]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(A)	14,130	14,401	14,667	14,925	15,198	73,320	14,664
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(B)	24,956	25,302	25,626	25,923	26,237	128,044	25,609
추가재정소요(B - A)	10,826	10,901	10,959	10,999	11,038	54,724	10,94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